

미국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FCC의 규제 완화

정 은 진*

1. 개 요

그동안 각국 정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연과 지분 소유 비율을 제한해왔다. 방송전파는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전파를 활용한 방송은 국가위급상황에서 재난방송 등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기관으로서 다양한 여론과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문화적 의존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소유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국내 방송법 제14조는 매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방송시장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소유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해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최대 4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최대 49%, 단, 종편 PP는 20%, 보도 전문편성 PP는 10%까지 외국자본의 주식 또는 지분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103 jean@kisdi.re.kr

최근 미디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의 미디어 정책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5년 3월 15일부터 국내 PP분야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개방한 바 있다. 방송법 제14조 제3항은 종편PP, 보도PP, 흡쇼 팽PP를 제외한 P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사업의 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 개선을 위해 자국의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올해 초 그 결실을 선보였다. 2017년 4월 20일, 새로운 규제지침을 담은 R&O의 전면 발효는 그간 경직되어 있던 방송분야 외국자본 유입의 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지상파방송시장 개방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³⁶⁾ 이에 따라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종전의 25%에서 100%까지 높여 허가한 사례가 최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미국 통신법상 외국인의 방송국 면허에 대한 소유제한 법규 및 FCC의 규제 지침 완화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2017년 통신법 제정 이래 최초로 외국자본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 투자에 대해 FCC에서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review)를 수행하고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을 승인한 사례 2건을 분석한다. 끝으로 한국 사업자의 미국 방송국 진출 및 미국의 한국 방송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을 진단한다.

2. 1934년 통신법상 외국인의 무선국면허 소유제한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은 케이블채널사업을 비롯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통신법 제310조에 따라 국가기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송, 기간통신사업자, 항공이동 무선국 또는 무선관제국”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용

36) 31 FCC Rcd 11272 (2016) (*2016 Foreign Ownership Order*).

되는 방송 사업이란 무선 주파수를 송출하는 지상파TV와 라디오방송사업에 국한된다. 동법에 근거하여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FCC는 무선통신에 대한 면허 부여권한 및 방송사업 규제 권한을 지닌다.

우선, 통신법 제310조(b)(3)는 외국인이 주식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는 방송국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310조(b)(4)는 외국인이 주식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FCC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국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CC는 위의 사업자가 면허를 이양하는 것에 대한 조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공익성 판단은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통신법상 방송, 기간통신사업자, 항공이동무선국 또는 무선관제국 면허를 외국인이 25%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갖는 회사에 이양하는 경우, FCC가 심사하고 허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일찍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까지 방송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도록 허가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송시장 개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표 1> 미 통신법 제310조 (47 U.S.C. §310)

<p>제310조 무선허가의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p> <p>(a) 외국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인은 무선국허가를 획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p> <p>(b)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송, 기간통신사업자, 항공이동무선국 또는 무선관제국의 허가가 부여될 수 없으며 허가를 보유할 수 없다.</p> <p>(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리인</p> <p>(2)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p> <p>(3) 외국인(외국정부, 외국정부의 대리인, 외국인, 외국인의 대리인, 외국법인)이 주식의 1/5(즉,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p> <p>(4) 외국인이 주식의 1/4(즉, 25%)을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로서 FCC가 허가의 거절 또는 취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p>

자료: 강하연 외 (2012)

주: 외국인 지분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규제 범조항(§ 310(c) ~ (e)) 생략

3. 최근 FCC의 규제 완화

(1) 2013년 방송분야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계획 발표

2013년 FCC는 통신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간접투자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개별 사례별로 심사하고 허가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³⁷⁾ 이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이다.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FCC는 방송국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 항공이동무선국의 경우에는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이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최대 100%까지도 직간접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³⁸⁾ 그러나 방송국 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송출되는 콘텐츠 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방송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외국인 소유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FCC의 기존 입장이었다(FCC, 2013: p.16245).

미국 방송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2012년 8월 31일, 방송투자연합(Coalition for Broadcast Investment, CBI)은 통신법 제310조(b)(4)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외국인의 25%이상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통신법 제정 이후 80년간 실제로 방송사업에서의 외국인 투자확대에 대한 FCC의 심사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규제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비판이었다. 공개 의견수렴 과정에서 CBI의 견해에 동의하는 의견서가 다수 제출되었다. 이로써 CBI의 요청서는 현행 FCC 규제가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과 기존 사업자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일조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는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e.g. Netflix, Apple, Google, Twitter 등)가 새로운

37) 28 FCC Rcd 16244 (2013 Broadcast Clarification Order).

38) DA-04-3610 (Foreign ownership guidelines for FCC common carrier and aeronautical radio licenses)

경쟁업체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와 달리 지상파 방송에만 비대칭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AB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안보 위협은 과거와 달리 지상파방송이 아닌 유무선 통신망에서 사이버 테러의 형태로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체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미디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소유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서도 제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다양성을 민주주의 실현의 선제 조건으로 간주해왔다(Levin & Litman, 1971; Napoli, 1999).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반독점 소유규제와 함께 여성과 소수자의 미디어 소유를 확대해온 것도 사실이다(Willson, 1988). 이와 같은 근거로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American Justice Center)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소규모 법인과 신규 사업자, 그리고 히스패닉,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태평양 섬주민 등 다원적인 소수민족의 미디어 소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업계 의견수렴 결과, 방송분야의 외국인 소유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11월 14일 FCC는 제310조가 적용되는 방송사업자가 FCC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개별 사례별로(case-by-case) 외국인 투자 계획을 심사하여 최대 100%까지의 간접투자를 허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³⁹⁾

(2) 2016년 방송분야 외국인 소유규제 개정 및 심사절차 도입

2015년 10월 22일 FCC는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소유규제 개정을 추진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⁴⁰⁾ 당시 FCC 위원장인 Tom Wheeler는 규제개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외국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미국 지역 방송사의 자본을 확충하고 자국민의 공공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FCC, 2015: p.43).

2015년 FCC가 발표한 법제도 개정안에는 개별 사례별로 공익성 심사 재량을 유지

39) 28 FCC Rcd 16244 (2013 Broadcast Clarification Order).

40) 30 FCC Rcd 11830 (2015 Foreign Ownership NPRM)

하되,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와 항공이동무선국에 걸쳐 개발된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소유방식별 조사방법을 방송분야에도 적용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FCC는 그간 수집된 의견과 자료를 정리하여 2016년 12월 1일 R&O를 통해 최종적인 외국인 소유규제 규정을 공표하였다.⁴¹⁾ 여기에는 미국 통신법에 대한 시행령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명령에서 47 C.F.R § 1.5000부터 § 1.5004, § 25.105, § 73.1010, § 74.5의 개정도 포함되었다. 이후 관련 문건은 연방정부의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⁴²⁾

새로운 법령 도입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다음 세 가지의 청원서를 새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1) 첫째, 방송국을 지배하는 미국 모회사(controlling U.S. parent)에 대한 외국인의 결권 및 지분 총계를 최대 100%까지 허용하나, 신분이 밝혀지지 않거나 (unnamed) 불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FCC의 허가를 구해야한다.
- (2) 둘째, 신분이 밝혀진 외국인 투자자가 방송국의 미국 모회사에 대한 100% 미만의 지배 지분 소유를 허가 받은 경우 추가 청원서 제출 없이 미래에 100% 지분을 획득할 것을 허용한다.
- (3) 셋째, 사전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 외국인에 한하여 미국 모회사에 대한 비지배(non-controlling) 지분 소유를 최대 49.99%까지 허용하며, 이때는 FCC의 추가적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위의 청원서를 FCC에 제출하면 FCC는 행정명령으로 규정한 심사절차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하고 청원서를 승인 또는 철회한다. FCC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common carrier)에서 규제효율성을 입증한 외국인 투자 청원서 심사 절차와 면허대상 회사, 계열사, 수평결합회사의 소유지분을 규제하는 산정방식 등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방송사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였다. 이때, FCC는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 법집행, 외교정책, 무역정책 담당 정부부서로 이루어진

41) 31 FCC Rcd 11272 (2016 Foreign Ownership Order).

42) Federal Register Vol. 82, No. 75 pp.18580-18581

실무 위원회(Executive Branch)로부터 잠재적인 정책 이슈나 공익성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답변서를 받아서 심사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FCC의 자의적 해석과 운용이 가능하였던 기존 규제의 결함을 상당부분 개선한 결과이다. FCC는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듬해 2017년 2월 FCC의 미디어 사무국은 민간 외국인 투자자의 라디오 방송국 투자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과 동시에 제도의 효력을 입증하는 첫 심사 사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초로 외국인이 미국 방송국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MO&O 발표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⁴³⁾

4. 외국인의 방송국 투자 청원서 심사 사례

(1) Corvex Master Fund LP의 청원서 심사 사례

2017년 Corvex Master Fund LP의 심사 사례는 개별 외국인/법인 투자자가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25%를 초과하는 비지배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이다. Corvex Master Fund LP는 카리브 해의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외국인 합자회사인데, 텔러웨어 주 소재의 미국 법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영되고 미국인이 모든 경영권 및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016년 Corvex Master Fund LP는 미국의 지상파 FM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한 모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청원의 대상이 된 지상파 FM 라디오 방송국은 사우스다코다 주 소재의 Pandora FM 방송국이다. 일찍이 2014년, Pandora FM 방송국의 모회사이자 공개상장회사인 텔러웨어 소재 Pandora Media Inc는 방송분야에 대한 FCC의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지침을 근거로 FM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 확대 승인을 신청

43) Radio World (Eggerton, 2017.2.24.), WileyOnMedia (Reed, 2017.2.28.), Lexology (Davis Wright Tremaine LLP, 2017.3.21.), Antenna Pillsbury (2017.3) 등에서 보도

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FCC는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여, Pandora Media Inc의 비지배 지분 49.99%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하는 확인 결정을 발표하였다.⁴⁴⁾ 해당 문건은 FCC가 새로운 법령 제정을 진행하는 동안 규제지침의 불확실성과 논란을 제거하는 초석이 되었다.

FCC의 확인결정에서 요구하는 허가조건에 따르면 방송국 소유권에 대한 변경사항을 집행할 때, 다음의 이슈가 발생하면 반드시 FC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 (1) 미국 모회사(Pandora Radio Inc)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권 및 지분 총량이 49.99%를 초과하는 경우
- (2) 외국인이 모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 (3) 개별 외국인이 소유하려는 Pandora Radio 면허에 대한 의결권 및 지분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덧붙여 FCC는 Pandora Radio Inc가 법인 내규에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사항들도 요구하였다. 내규에 의거하여 Pandora Radio Inc는 (1) 외국인에게 지분 이양을 제한할 권한, (2) 외국인이 의결권 및 지분을 취득하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 (3) 필요시 외국인의 지분 상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 한다. 반면 방송국은 2년마다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의 국적을 파악하는 소유권 보고서(FCC Form 322)와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FCC에 제출해야하는데, 방송국이 면허조건 및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의무불이행시, 30일 이내로 해명서를 FCC에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Corvex Master Fund LP는 (1) 현재 Pandora Media Inc.(Pandora FM 방송국의 모회사)에 대한 비지배 지분을 4.95%에서 9.99%로 높이고 (2) 향후 비지배 지분을 최대 14.99%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한 사전 허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2월 14일 FCC 미디어 사무국과 정부부처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해당 지상파 FM 라디오 방송국의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⁵⁾

44) 30 FCC Rcd 5094 (2015 Pandora Radio Declaratory Ruling)

45) DA 17-166 (Corvex Declaratory Ruling)

(2) Frontier Media LLC의 청원서 심사사례

2016년 6월, 복수의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 대하여 호주 국적 외국인이 100%의 지배 지분 소유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FCC에 제출하였다. 특별 직업비자(E-3)를 보유한 호주국적 부부 Richard Burns와 Sharon Burns는 알래스카 소재의 미국 기업 Frontier Media LLC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호주 부부는 Frontier Media LLC를 매개로 총 29개의 방송국을 보유한 4개의 방송면허권자 지분을 100% 매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AM방송국 7개, FM방송국 8개, FM 중계기 13개⁴⁶⁾, UHF TV 중계기 1개가 포함되었다.

〈표 2〉 Frontier Media LLC 소유 방송국의 수 및 방송유형

방송지역		방송국 개수	방송유형 및 방송국 명칭
알래스카 주	Juneau 시	5	country "Taku 105" KTKU hot AC "Mix 106" KSUP AC KINY (800) classic hits "Greatest Hits 1330" KXXJ talk/sports KNJO (630)
	Ketchikan 시	2	"Gateway Country 106.7" KGTW talk KTKN (930)
	Sitka 시	2	classic rock "The Rock 103.1" KSBZ AC KIFW (1230)
텍사스- 아르칸사스 주	Texarkana 시	6	country "101.7 Hot FM" KBYB CHR "107.1 The Fox" KTFS-FM urban AC "Jammin' 104.7" KTOY-FM classic hits "Hits 105" (KTTY (102.1)/KCMC (940) 동시전송) "Talk Radio 740" KTFS
총 계			18

자료: InsideRadio (2017.2.27.) 및 FCC (2017b)

46) 74 C.F.R. § 1201(a)에 따라 FM translator(중계기)란, AM 또는 FM 라디오방송국 또는 다른 중계기의 신호를 재송신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지로서 신호 변경 없이 주파수 또는 진폭의 변조만을 함. Frontier Media LLC가 신청한 모든 AM방송국은 FM 중계기를 보유하고 있어 AM/FM 동시송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청원서를 제출한 호주 부부는 2011년부터 미국에서 방송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통신법 § 310(b)(3)에 의거하여 신청대상 방송면허권자 4개에 대해 이미 20%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 가족(E.Roy Paschal, Jason Paschal)이 나머지 80%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주 부부는 Frontier Media LLC를 매개로 의결권과 배당지분을 모두 매입하고자 하였다. 소유변경을 통해 Burns 부부의 직접 지분은 0%가 되고, 대신 Frontier Media LLC가 방송면허권자를 100% 소유하고 방송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한 모기업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규정하는 통신법 § 310(b)(4)에 의거하여 FCC에 소유권 이양(transfer of ownership)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Frontier Media LLC는 방송면허 소유권 이양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다. 우선 Frontier Media LLC는 신원이 명확히 판별되는 개인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Pandora Media LLC와 같은 공개상장기업에 참여하는 불특정 외국인 투자자와 차별되었다. 특히 Frontier Media LLC의 공동소유자인 Richard Burns는 2006년부터 알래스카 주 소재 방송국의 CEO이자 2013년부터 텍사스카나 시 소재 방송국의 CEO로 활동하여 10년 이상의 방송사업 경영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2010년 알래스카에서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여받은 바도 있었다. FCC 또한 Burns 부부의 Frontier Media LLC가 알래스카 지역에서 방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국의 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진실성(personal bona fide)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FCC는 Frontier Media LLC의 청원서가 규제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공익성 심사 실무위원회(Executive Branch)도 국익과 국가안보, 준법여부에 대한 심사 후 반대의견 없음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FCC에 전달하였다. 최종적으로 2017년 2월 23일, FCC 미디어 사무국은 MO&O를 공표하여 청원서에 반대의견이 없음을 밝혔다.⁴⁷⁾ 단, Burns 부부 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47) DA 17-190 (*Frontier Media MO&O and Declaratory Ruling*).

Frontier Media LLC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FCC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업 허가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30일 이내로 해명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명문화하고 있다.

〈표 3〉 Corvex Master Fund와 Frontier Media의 FCC 심사사례 비교

사업자 명	Corvex Master Fund LP	Frontier Media LLC
외국인 국적	케이맨 제도	호주
속성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했으며 미국 텔레웨어 주 소재 법인이 지배하는 합자회사	호주국적 외국인 2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미국 알래스카 주 소재 회사
청원 내용	Pandora FM의 모회사 Pandora Media Inc에 대한 비지배적 지분 4.99% → 9.99%로 확대 (추후 14.99%까지 증가)	라디오 방송국 면허권자 4개에 대한 지배적 지분 100% 소유
취득대상 방송국(면허) 수	FM 방송국 1개(Pandora FM)	AM 방송국 7개, FM 방송국 8개, FM 중계기 13개, UHF 중계기 1개
방송국 소재	South Dakota 주 Box Elder 시	Alaska 주 Ketchikan 시, Alaska 주 Juneau 시, Texas 주-Arkanas 주 Texarkana 시
청원 근거	Communications Act § 310(b)(4), <Pandora Declaratory Ruling>, <2013 Broadcast Clarification Ruling>	Communications Act § 310(b)(4), <2013 Broadcast Clarification Ruling>, <2016 Foreign Ownership Report & Order>
심사 결과	허가	허가

자료: FCC의 Corvex Master Fund LP, Frontier Media LLC에 대한 Declaratory Ruling

5. 결론 및 시사점

세계 각국은 국내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 국제적 규범의 틀 등을 감안하여 안보 위험을 줄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의 규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FCC가 새로이 제정한 가이드라인과 심사 기준은 방송시장 내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2017년 2건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청원서를 승인함으로써 미국 내 지역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고, 미국 지상파 방송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방송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역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도 상호호혜적 기회(reciprocal opportunity)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FCC, 2017b). 2013년 미국의 방송분야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논의가 촉발되었을 당시부터 미국 방송업계에서는 미국 방송국이 외국인의 지분을 허용할 경우, “중남미, 중국, 한국, 호주 등에 상호호혜적인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담아 FCC에 제출한 바 있다(FCC, 2013: p.16249).

더욱이 이는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일부 서비스, 신산업분야 개방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방송시장에 대해 미국이 상호적인 투자 개방을 요구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국 투자자의 미국 방송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압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면밀하고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하연·전용욱·박은지·여혁중 (2012).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기본연구12-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Antenna Pillsbury (2017.3.) *100 Percent Foreign Ownership Approved for Broadcast Parent*.
- Davis Wright Tremaine LLP (2017.3.21.). *FCC Approves First 100% Foreign Owner of US Broadcast Stations*. Lexology.
- Egerton, J. (2017.2.24.) *FCC Grants 100% Foreign Control of U.S. Broadcast Group*. Radio World.
- FCC (2004). Foreign ownership guidelines for FCC common carrier and aeronautical radio licenses, DA-04-3610.
- FCC (2013). *Commission Policies and Procedures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Foreign Investment in Broadcast Licensees*, MB Docket No. 13-50, Declaratory Ruling, 28 FCC Rcd 16244 (2013) (2013 Broadcast Clarification Order).
- FCC (2015a). *Pandora Radio LLC 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MB Docket No. 14-109, Declaratory Ruling, 30 FCC Rcd 5094, 5095-96, para. 4 (2015) (*2015 Pandora Declaratory Ruling*), recon denied, 30 FCC Rcd 10570 (2015).
- FCC (2015b). *Review of Foreign Ownership Policies for Broadcast, Common Carrier and Aeronautical Radio Licensees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GN Docket 15-236,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30 FCC Rcd 11830 (2015) (2015 Foreign Ownership NPRM)

- FCC (2016). *Review of Foreign Ownership Policies for Broadcast, Common Carrier and Aeronautical Radio Licensees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Report and Order, 31 FCC Rcd 11272 (2016) (2016 Foreign Ownership Order).
- FCC (2017a). *Corvex Master Fund LP 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MB Docket No. 16-253, Declaratory Ruling, DA 17-166m (*Corvex Master Fund LP Declaratory Ruling*).
- FCC (2017b). *Frontier Media, LLC Applications for Consent to Transfer Control of Licenses and 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 Under Section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MB Docket No. 16-212,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and Declaratory Ruling, DA 17-190, (*Frontier Media MO&O and Declaratory Ruling*).
- Inside Radio (2017.2.27.) *FCC OKs Groundbreaking Foreign Ownership Milestone*.
- Levin, H. & Litman, B. (1971). Socioeconomic Aspects of Program Diversity. *Studies of Broadcasting*, 6, 1-21.
- Napoli, P.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 49, 7-34. doi:10.1111/j.1460-2466.1999.tb02815.x
- Reed, E. K. (2017.2.28.). *FCC Grants First 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 Allowing 100% Foreign Ownership of Broadcast Station Licensees*. WileyonMedia.
- Wilson, L. C. (1988). Minority and gender enhancements: A necessary and valid means to achieve diversity in the broadcast marketplace. *Fed. Comm. LJ*, 40, 89.